제1004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개정안 (환경부)	1.사고대비물질 신규 지정(신설) ㅇ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되고 있는 물질이나,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으로 인체 만성 유해성으로만 분류되어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거나,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사고 위험 및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일렌, 스티렌, 1,3-부타디엔 3종을 추가로 지정 ▶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▶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▶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전체	1.비중요
2	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(환경부)	1.차량 운송시설 기준(신설) ㅇ 부식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내식성이 있는 적절한 재질의 라이닝을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[별표 1] 세부기준을 실효성있게 구체화 ▶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	1.비중요
3	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정기검사의 절차 및 결과 제출(신설) ㅇ 정기검사 절차 및 검사결과서등의 제출시기, 방법 등에 대한 규정 신설 ▶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▶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, 제3조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검사기관 지정 절차·요건 및 변경신청(신설) ㅇ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·단체가 갖추어야 할 지정 절차 및 지정요건, 지정사항 변경 등에 대한 규정 신설 ▶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▶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, 제4조의3, 제5조	2.중요
		3.검사기관의 준수사항(신설) ㅇ 검사기관의 시설·장비 및 인력요건, 검사 소요 기간, 검사 건수, 수수료 및 시험방법의 준수, 시료 및 표준품 등의 관리, 기록관리시스템 설치·운영 등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신설 ▶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▶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	3.비중요
		4.행정처분 기준(신설) ㅇ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, 검사결과서 작성·발급, 검사기관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,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미준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▶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▶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, 제8조의1	4.비중요
		5.회수계획 보고(신설) ㅇ 회수방법 및 회수기간 등이 포함된 ‘회수계획보고서’와 사후처리 계획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‘회수종료보고서’ 제출 등에 대한 규정 신설 ▶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▶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	5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(강화) ㅇ 승강식피난기의 신규시험 도입을 통한 제품 안전성 확보 및 기준 명확화를 위한 시험기준 규정 ▶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▶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,제5조의2,제6조,제6조의2,제9조의2,제9조의3,제9조의4,제9조의5	1.비중요
5	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부당권유행위 금지(신설) ㅇ 적합성 ·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 특정 대답 유도 행위,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 행위 금지에 추가 ▶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	1.비중요
		2.내부통제기준 포함 사항(신설) ㅇ 내부통제기준상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추가하고,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신설 ▶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별표의2	2.비중요
6	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·재임 제한명령의 상향조정 사유 추가(강화) ㅇ 금융투자상품 거래, 상장사 · 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기간(최대5년)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 임 · 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상향조정사유(기간 가중 사유)로 규정 ▶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8조의3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 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기준(신설) ○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전문부서, 상근전문이력, 시설·장비 세부 요건을 정함. ▶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 제2조	1.비중요